

제한입찰 사유서

■ 제한입찰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제2항 준용

※ 제9조(계약의 방법)

-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 준용

※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 및 제9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로서 추정가격 3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시공능력 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그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한 입찰의 제한기준) 제2항 제1호 가목 준용

※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영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 및 시공능력에 따라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실적 및 시공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실적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양·금액. 다만, 계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목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 가.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3분의 1 이내.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성, 안전성, 난이도, 계약방법 등을 고려하여 제한기준의 상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의 범위에서 최소 실적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입찰참가 자격

- 외국환거래법에 의거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환전업으로 등록된 사업자
- 외국환거래규정에 의거 무인환전영업자로 등록된 사업자
-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의거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필한 사업자
- 입찰공고일 기준 무인환전 키오스크를 국내에서 3개월 이상, 4개소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사업자

■ 제한입찰 사유

- 환전업무 특성 상 외국환거래법을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특수 사업인 만큼 최소한의 운영 실적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2019 . 08. .

작성자 : 공간사업처 주임 김 성 연 (서명)

확인자 : 공간사업처 처장 김 정 환 (서명)